

제 131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청소년, 공공안전 & 정의 위원회 설립

뉴욕주는 Close to Home 이니셔티브, 지역청소년정의팀, 구류 위험 평가,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및 투옥 대안 증대를 포함하여 재화를 강화하고 청소년 및 성인 사법 제도에서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뉴욕주가 그러한 투자를 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 폭력 및 투옥율이 상당히 줄어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주는 일련의 청소년 사법 개혁에서 미국을 선도함에도 불구하고 16 및 17세를 성인 형사 제도를 통해 계속 기소하는 단 두 개 중 중 하나입니다. 기소되는 16 및 17세들의 대부분은 유색 청소년입니다;

성인과 함께 투옥되는 청소년들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폭력 또는 성폭행, 정신 건강 문제 및 자살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어떤 주에서는 사건이 성인 법원 바깥에서 처리된 청소년에 비해 사건이 성인 법원에서 처리된 청소년들의 경우 재범률이 3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뇌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지 기능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 압력에 더 취약하고 성숙한 판단 및 결과 사고력이 떨어지지만 개입에는 고도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법원 출입 청소년의 결과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범죄를 더욱 줄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A. 청소년, 공공안전 & 정의 위원회

1. **청소년, 공공안전 & 정의 위원회(“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 사법 제도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권고안을 주지사에게 제공한다.
2.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의해 선임되는 표결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 선임시 주지사는 판사, 법집행 관리, 보호관찰 행정관, 아동 복지 전문가, 옹호자, 서비스 제공자, 지역 정부 관리 및 기타 중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및 형사 제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관점, 이익 및 특정 지식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주지사는 아동가족서비스실장; 형사정의서비스과장; 보호관찰교정대안실장 및 교정커뮤니티감독부장을 선임해야 한다. 이들은 비표결 직무상 위원으로 복무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주지사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공동의장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주지사는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해야 한다.
4. 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모든 권고안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5. 본 주의 모든 국, 부, 실, 과 또는 청은 본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주 시설 사용을 포함하여 정보, 지원 및 협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 이행에 필요한 직원 지원은 주 국 및 청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그러한 청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6. 위원회는 그러한 지원에 관한 모든 법규에 따라 민간 기관의 인적자원, 전문지식 및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한 지원은 재정적 보수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의 실제적인 충돌 또는 그러한 충돌의 외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7. 위원회는 업무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또는 주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때에 위원회는 여기 기술된 직무와 활동을 완료하고 주지사에게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그 때 위원회는 업무를 종료하고 본 명령에 의거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벗는다.

B. 임무와 목적

1. 본 위원회는 (a) 청소년 관할 연령을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b) 기타 뉴욕주 사법 제도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목적을 수행하면서 위원회는 지역사회 보호와 희생 예방이 계속해서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하고:
 - a. 청소년 관할 연령을 높이기 위한 계획, 구조, 절차 및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
 - b.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의 수정을 식별하되, 지역사회 안전, 과학, 증거, 재범율을 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범 관행, 비용-효용 분석 및 법원 복무 청소년의 서비스 니즈(성별 니즈 포함)를 포함한 기타 요인, 청소년 정의의 구현 능력 및 체계, 형사 정의, 아동 복지 및 인적 서비스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 c. 청소년을 더 잘 섬기고, 결과를 개선하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희생을 예방하며, 심각한 난폭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소수 청소년들 사이의 해 축소를 다루고, 청소년 정의와 공공안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국적 리더로서의 뉴욕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단기, 중기, 장기 권고안을 수립해야 한다.
2. 주지사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에 위원회는 소건의 요약 및 설명과 권고안을 포함해야 한다. 각 권고안은 재정적 영향 추정, 예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 절약 옵션 및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현재도 능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2014년 4월 9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